

제한경쟁 사유서

계약건명	2026년 서울시50플러스재단 차세대 경영관리시스템 구축 사업	
소요예산	금396,478천원(금삼억구천육백사십칠만팔천원) / 부가세 포함	
제한경쟁 법적근거 (해당사항에 체크)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참고	1. 해당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 -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종합공사, 3억원 이상 전문·기타공사 -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 - 추정가격 2억원 이상 특수한 설비·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·용역	√
	2. 기술보유상황 - 특수한 기술·공법이 요구되는 공사,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·물품제조	
	3. 시공능력평가액 -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종합공사, 3억원 이상 전문·기타공사	
	4. 지역 -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종합공사, 10억원 미만 전문공사, 5억원 미만 기타공사 - 추정가격 3.5억원 미만 용역·물품, 3.3억원 미만 건설기술·엔지니어링용역, 1.5억원 미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	
	5. 설비 : 특수한 설비가 요구되는 물품제조	
	6. 유자격자명부	
	7. 물품납품능력 : 특수한 성능·품질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인증 등 받은 물품	√
	8. 중소기업자	√
	9. 소기업·소상공인	
	10. 기타 (직접 기재)	
제한경쟁 사 유	전문성, 기술성이 요구되는 사업 -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에 따른 정보화 관련 사업	
실적제한시 제한범위	○ 실적인정기간 : 최근 3년 이내 -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동향 및 최신 트렌드의 영향이 큰 업무로 실적 인정기간 최근 3년 이내로 제한 ○ 실적인정기준 : 50,000천원 - 사업 규모의 1/3 이내(금액의 경우 추정가격 기준)로 제한하지 않는 경우 사유 기재	

담당 :	직급 : 7급	성명 : 김정현	(서명 또는 인)
본부장 :	직급 : 2급	성명 : 이민정	(서명 또는 인)
상기와 같이 제한경쟁 사유서를 제출합니다.			
2026년 6월 15일			
서울시특별시50플러스재단 회계책임자 귀하			